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85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허 영·박재호·전재수

위성곤 • 이형석 • 박상혁

이용빈 · 홍기원 · 김원이

강선우 · 이광재 · 인재근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숲과 식물을 활용한 우울감 극복 및 면역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는 것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 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 나.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제18조의7).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0).
-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조의12부터 제18조의14까지).

법률 제 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의2(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정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 피한 경우
-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정원조성예정 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지·농지의 전용
-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 3. 건축물의 건축
- 4. 인공구조물의 설치

제18조의9를 삭제하고, 제18조의5를 제18조의9로 하며, 제18조의13부터 제18조의20까지를 각각 제18조의21부터 제18조의28까지로 하고, 제18조의10부터 제18조의12까지를 각각 제18조의18부터 제18조의20까지로 하며, 제18조의8을 제18조의17로 하고,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로 하며,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정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4(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정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 아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18조의5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2. 정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정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18조의5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의5(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 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원조 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18조의6(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의7(종전의 제1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정원의 조성·운영"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정원의"로 한다.

-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8조의8(종전의 제18조의4)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정원의 등록·운영 등

제18조의8(종전의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의6제2항에"를 "제18조의10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목유전자원의"를 각각 "식물의"로 한다.

제18조의9(종전의 제18조의5)제1항 중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을 "정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원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0(종전의 제18조의6)의 제목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를 "(정원의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11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정원의 진흥

제3장제3절에 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12(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원진 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 제18조의13(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범위·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14(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의15(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6(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 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0(종전의 제18조의12)제1항 중 "제18조의11제2항에"를 "제18조의19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의11제1항에"를 "제18조의19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11제5항에"를 "제18조의19제5항에"로 한다.

제18조의22(종전의 제18조의1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를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국가"로 한다.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1조제2호의2 중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를 "제18조의4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를 "제18조의4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4중 "제18조의4제5항에"를 "제18조의8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제18조의12에"를 "제18조의20에"로 한다.

제23조의3 중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6조의2제6항 및 제18조의2제6항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의11제4항을"을 "제18조의19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14제5항을"을 "제18조의22제5항을"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신 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 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 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 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 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 각 준용한다.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제18조의2(정원조성예정지의 지
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정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정

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 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 오
-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 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 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 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정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지·농지의 전용
-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 3. 건축물의 건축4. 인공구조물의 설치

제18조의3(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가정원 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정원조성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 략할 수 있다.

제18조의4(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정원(국가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정원조성계획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 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 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 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18 조의5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사업을 중단한 경우
- 2. 정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정원조성계획을 수 했다고 인정하는 경

<u>우</u>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 보하여야 한다.
-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18조의5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5(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들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

 발행위의 허가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u>하천점용의 허가</u>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 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8조의6(토지 등의 수용) ①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u>제18조의3(국가정원의</u> 지정 등) <u>제18조의7(국가정원의</u> 지정 등) <신 설>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의7(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u>				
		<u>د</u>	관할	시·도지
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

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 ② 산림청장은 <u>지방정원의 조</u> 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 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 (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보유하고 있는 <u>수목유전자원</u>

<u> </u>
· <u>④</u>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의 운영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u>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u>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제2절 정원의 등록·운영 등
<u>제18조의8</u> (정원의 등록) ①
<u>제18조의1</u>
<u> 0제3항에</u>
1. ~ 4. (현행과 같음)
5

<u>의</u> 목록

- 6.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u>국가정원의</u>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u>정하며, 지방정원에 대</u>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의6(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신 설>

6. (현행과 같음) ②
<u>식물의</u> -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9(</u> 정원의 입장료 등) ①
<u>정원을</u>
② 제1항에 따른
<u>정한다</u> . <u>다만, 지방정</u>
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제18조의10(정원의 운영·관리)</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생략)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관리 평가)(생략)

<신 설> <u><신</u> 설>

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 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 제18조의11(정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 평가) (현행 제18조의7과 같음)

> 제3절 정원의 진흥 제18조의12(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 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위탁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의13(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범위·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14(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 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 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의15(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 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의16(국제교류 및 해외시 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 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u>제18조의8</u>(박람회 등 지원) (생략)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 구
-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평가
-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 교류
-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 산
-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 업지원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18조의17</u>(박람회 등 지원) (현 행 제18조의8과 같음)

<삭 제>

-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제18조의10</u>(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생 략)
- 제18조의11(수목원 또는 정원 전 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생략)
- 제18조의12(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
 18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제18조의11제1항에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u>제18조의18</u>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행 제18조의10과 같
<u>Ф</u>)
제18조의19(수목원 또는 정원 전
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현
행 제18조의11과 같음)
<u>제18조의20</u> (지정의 취소 등) ① -
<u>제1</u>
8조의19제2항에

-제18조의19제1항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u>제18조의11제5항에</u>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u>제18조의13</u>(수목원 또는 정원 전 문가의 활용) (생 략)

- 제18조의14(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 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 (생략)

<신 설>

- 2. (생략)
- 3. <u>국가</u>,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4. (생략)
- ② ~ ⑤ (생 략)

제18조의15(임원)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8조의19제5항에</u>
<u>제18조의21</u> (수목원 또는 정원 전
문가의 활용) (현행 제18조의13
과 같음)
제18조의22(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
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u>위하여 국가</u>
4. (현행과 같음)
⑦ ~ ⑤ (혀해과 간으)

제18조의23(임원) (현행 제18조의

15와 같음) 제18조의16(직원 등) (생 략) 제18조의24(직원 등) (현행 제18 조의16과 같음) 제18조의17(운영비 등) (생 략) 제18조의25(운영비 등) (현행 제1 8조의17과 같음) 제18조의18(기부금품의 접수) (생 제18조의26(기부금품의 접수) (현 행 제18조의18과 같음) 략) 제18조의19(사업계획서 등의 제 | 제18조의27(사업계획서 등의 제 출 및 업무보고)(생 략) 출 및 업무보고) (현행 제18조 의19와 같음) 제18조의20(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의28(다른 법률의 준용) (생 략) (현행 제18조의20과 같음)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 제21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 2의2. 제18조의4제5항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 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3. 제18조의4제6항에---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 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 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2의4. 제18조의8제5항에-----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 <u>제18조의12에</u> 따른 수목원	3. <u>제18조의20에</u>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및 제18조의2제6항을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2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2. 제18조의19제4항을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3. <u>제18</u> 조의22제5항을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